

바로 보는 법규·정책

Regulation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 시사점

2025.07.04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바로 보는 법규·정책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 시사점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항목	내용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명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3% Rule 강화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 상향조정	상장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

기업의 거버넌스, 내부통제 시스템, 주주권 보호, 기업의
대외신뢰도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바로 보는 법규·정책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 시사점

주요 상법 개정안(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포함¹⁾
주주 전체를 단일한 집단으로 보아 그들의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석



개정내용

현행 상법

-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부담



개정 상법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
-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

(공포 후 즉시 시행)



시사점

- 회사의 합병·분할·주식교환·자본감소 등의 의사결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소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시 주주가치 반영 여부를 다루고,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록

1) 상법 제382조의3 제1항

바로 보는 법규·정책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 시사점

주요 상법 개정안(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3% Rule 강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합산 3% Rule)



개정내용

현행 상법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경우 개별 3% 적용
개정 상법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경우 합산 3% 적용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사점

-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
-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 역할에 충실

바로 보는 법규·정책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 시사점

주요 상법 개정안(3)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 상향조정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



개정내용

현행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개정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함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사점

-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강조
- 독립이사는 지배주주·경영진을 견제하여 전체주주의 이익을 대변

바로 보는 법규·정책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 시사점

주요 상법 개정안(4)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통해
주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개정내용

현행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를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개최 장소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개정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할 수 있고,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용이하게 함

(공포 후 1년 후 시행)



시사점

- 보다 많은 주주들의 참여로 기업의사결정에 견제기능 강화
- 기업의 비용절감, 효율성과 주주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주총회의 활성화 촉진